**경품류 등의 지정고시 운용기준에 대해**

(1977년 4월 1일 사무국장 통달 제7호)

개정 1988년 10월 1일 사무국장 통달 제11호

1996년 2월 16일 사무국장 통달 제1호

2006년 4월 27일 사무총장 통달 제4호

2014년 12월 1일 소비자청 장관 결정

2024년 4월 18일 소비자청 장관 결정

경품류 등의 지정 고시(1962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3호)의 운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했으므로 이에 따라 주길 바란다.

또한, 본 운용기준은 2004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경품류 등의 지정고시의 운용기준

1.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에 대해

(1) 제공자의 주관적 의도나 그 기획의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고객 유인을 위한 수단이 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따라서, 예를 들면, 친목, 의례, 사은 등을 위해, 각자가 공급하는 상품 용기의 회수 촉진을 위해, 또는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에 관한 시장 조사의 설문조사 용지의 회수 촉진을 위한 금품의 제공일지라도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제공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2) 새로운 고객의 유인에 한정하지 않고, 거래의 계속 또는 거래량의 증대를 유인하기 위한 수단도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수단”에 포함된다.

2. “사업자”에 대해서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 공제조합 등일지라도 상품 또는 역무를 공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학교법인, 종교법인 등일지라도 수익사업(사립학교법 제26조 등에 정하는 수익사업을 말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사업에 대해서 사업자에 해당한다.

(3) 학교법인, 종교법인 등 또는 지방공공단체 그 외 공적기관 등이 일반사업자의 사적인 경제활동과 유사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사업자에 준하여 취급한다.

(4) 사업자 단체가 구성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역무의 거래에 부수적으로 부당한 경품류의 제공을 기획하고 실시하게 한 경우에는 그 경품류를 제공한 구성사업자에 대해서 경품표시법이 적용된다.

3. “스스로 공급하는 상품 또는 역무 거래”에 대해

(1) “스스로 공급하는 상품 또는 역무 거래”에는 스스로 제조하거나 또는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최종수요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유통단계에서의 거래가 포함된다.

(2) 판매 외 임대, 교환 등도 “거래”에 포함된다.

(3) 은행과 예금자의 관계, 신용회사와 카드를 이용하는 소비자와의 관계 등도 “거래“에 포함된다.

(4) 스스로가 일반소비자로부터 물품 등을 매입하는 거래도 해당 거래가 해당 물품 등을 사정하거나 하여 해당 물품 등을 금전으로 교환하는 역할을 제공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공급하는 역무의 거래”에 해당한다.

(5) 상품(갑)이 원자재로 제조된 상품(을)의 거래는 상품(갑)이 그 제조공정에서 변질되어 상품(갑)과 상품(을)이 별종의 상품으로 인정되게 된 경우, 상품(갑) 공급업체에 있어서, “스스로 공급하는 상품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상품(을)의 원자재로 상품(갑)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상품(을)의 수요자에게 분명한 경우(예를 들면, 콜라음료 원액 공급자가 그 원액을 사용한 병에 넣은 콜라 음료에 대해 경품류를 제공하는 경우), 상품(을) 거래는 상품(갑)의 공급업자에게 있어서도 “스스로 공급하는 상품의 거래”에 해당한다.

4. “거래에 부수하여“에 대해

(1) 거래를 조건으로 다른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거래에 부수“하는 제공에 해당한다.

(2) 거래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경우라도 경제상의 이익의 제공이 다음과 같이 거래 상대방을 주요 대상으로 행해질 때는 “거래에 부수“하는 제공에 해당한다(거래에 부수하지 않는 제공방법을 병용하고 있어도 마찬가지이다).

가. 상품의 용기포장에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기획의 내용을 고지하고 있는 경우(예: 상품의 용기포장에 퀴즈를 출제하는 등 응모 내용을 기재하고 있는 경우)

나. 상품 또는 역무를 구입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제공 받을 수 있거나 또는 수월하게 되는 경우(예: 상품을 구입하지 않으면 해답이나 그 힌트를 모를 경우, 상품의 라벨 모양을 모사하는 등의 퀴즈를 신문광고에 출제해 응답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 소매업자 또는 서비스업자가 자기 점포 입점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다른 사업자가 행하는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기획이어도, 스스로 해당 다른 사업자에게 협찬, 후원 등의 특정 협력관계에 있어서 공동으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

라. 다음과 같은 자신과 특정 관련이 있는 소매업자 또는 서비스업자의 점포 입점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① 자신이 자본의 과반을 출자한 소매업자 또는 서비스업자

② 자신과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한 프랜차이저

③ 그 소매업자 또는 서비스업자의 점포 입점자 대부분이 스스로 공급하는 상품 또는 역무의 거래 상대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예: 석유공급업자와 계열주유소)

(3) 거래를 권유 시 상대방에게 금품, 초대권 등을 공여하는 경우에는 “거래에 부수“하는 제공에 해당한다.

(4) 정상적인 상관습에 비추어 거래의 본래 내용을 이룬다고 인정되는 경제상의 이익 제공은 “거래에 부수“하는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예: 복권 당첨금, 파칭코 경품, 다방 커피에 첨가되는 설탕 · 크림).

(5) 어떤 거래에 있어서 둘 이상의 상품 또는 역무가 제공되는 경우일지라도, 다음의 “가”에서 “다”까지 중 하나에 해당할 때는 원칙적으로 “거래에 부수”하는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현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예: “○○ 당첨“) 및 거래 상대방에게 경품류로 인식되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예: “○○선물“, “××를 사면 ○○를 제공한다”, “○○ 무료”는 “거래에 부수“하는 제공에 해당한다.

가. 상품 또는 역무를 둘 이상 조합하여 판매하고 있음이 명확한 경우(예: “햄버거와 음료 세트로 ○○엔”, “골프 클럽, 백 등의 용품 세트로 ○○엔”, 미용사의 “컷(샴푸, 블로우 포함)) ○○엔”, 간장과 샐러드 기름 동봉)

나. 상품 또는 역무를 둘 이상 조합하여 판매하는 것이 상습관으로 되어 있는 경우(예: 승용차 및 예비 타이어)

다. 상품 또는 역무가 둘 이상 조합됨에 따라 독자적인 기능, 효용을 가진 하나의 상품 또는 역무로 되어 있는 경우(예: 완구과자, 패키지 여행)

(6) 광고에 있어서 일반소비자에게 경제상의 이익 제공을 제기하는 기획이 거래에 부수한다고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응모자 중에 가끔 해당 사업자가 공급한다 상품 또는 역무의 구매자가 포함될 때라도 그 자에 대한 제공은 “거래에 부수”하는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

(7) 스스로 공급하는 상품 또는 역무의 구입자를 소개해 준 자에 대한 사례는 “거래에 부수“하는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소개자를 해당 상품 또는 역무 구입자로 한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물품, 금전 그 외 경제상의 이익”에 대해

(1) 사업자가 그를 위한 특별한 지출을 필요로 하지 않고 제공할 수 있는 물품 등일지라도, 또는 시판되지 않는 물품 등일지라도, 제공을 받은 자 입장에서 보아, 통상,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여 취득한다고 인정되는 것은 “경제상의 이익“에 포함된다. 단,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여 취득한다고 인정되지 않는 것(예: 표창장, 표창방패, 표창배지, 트로피 등과 같이 상대방의 명예를 나타내는 것)은 “경제상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상품 또는 역무를 통상 가격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이익도 “경제상의 이익”에 포함된다.

(3) 거래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경제상의 이익일지라도 업무 보수 등으로 인정되는 금품의 제공은 경품류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예: 기업이 그 상품의 구입자 중에서 응모한 모니터에 대해 지불하는 그 업무에 상응하는 보상).

6. “정상적인 상습관에 비추어 할인으로 인정되는 경제상의 이익”에 대해

(1) “할인으로 인정되는 경제상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거래의 내용, 그 경제상의 이익 내용 및 제공방법 등을 감안하여 공정한 경쟁질서의 관점에서 판단한다.

(2) 이와 관련하여 공정경쟁규약이 설정된 업종에 대해서는 해당 공정경쟁규약이 정하는 바를 참고한다.

(3)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상관습에 비추어 할인으로 인정되는 경제상의 이익“에 해당한다.

가. 거래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에 따라, 거래 상대방에게 지불해야 할 대가를 감액하는 것(여러 번의 거래를 조건으로 대가를 감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예: “×개 이상 구매하는 분에게는 ○○엔 할인”, “신사복을 구매하는 분에게는 그 즉시 코트 ○○% 할인”, “×××엔 구매마다 다음 번 쇼핑 시 ○○엔 할인”, “×회 이용하면 다음 번에 ○○엔 할인”).

나. 거래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에 따라, 거래 상대방에게 지불한 대금에 대해 리베이트를 하는 것(여러 번의 거래를 조건으로 레베이트 하는 경우 포함) (예: 영수증 합계금액의 ○% 리베이트), “상품 씰을 ○장 모아서 송부하면 ○○엔 캐쉬백”.

다. 거래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에 따라, 어떤 상품 또는 역무의 구매자에 대해, 동일한 대가로 그와 동일한 상품 또는 역무를 부가 제공하는 것(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품 또는 역무를 부가하여 제공하는 경우 및 여러 번의 거래를 조건으로 부가하여 제공하는 경우 포함(예: “CD 3장을 사면 1장 더 증정”, “신사복 한 벌을 사면 예비 바지 무료“, “커피를 5번 마시면 커피 1잔 무료권을 서비스“, “클리닝 스탬프 ○○개로 와이셔츠 1장 분을 서비스”, “당사편 ○○마일 탑승자에게 xx행 항공권 증정”).). 단, “커피 ○번 마시면 주스 1잔 무료권을 서비스“, “햄버거를 사면 프라이드 포테이토 무료” 등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동일 상품 또는 역무 추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가격으로 인정되는 경제상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대가의 감액 또는 리베이트일지라도 현상에 의한 경우, 감액 또는 리베이트된 금전의 용도를 제한하는 경우(예: 여행비용에 충당하게 하는 경우) 또는 동일한 기획에 있어서 경품류의 제공을 아울러 실시하는 경우(예: 거래 상대방에게 금전 또는 초대 여행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경우)

나. 어떤 상품 또는 역무의 구매자에게 동일한 대가로 그와 동일한 상품 또는 역무를 부가하여 제공하는 경우일지라도, 현상에 의한 경우 또는 동일한 기획에 있어서 경품류의 제공을 함께 하는 경우(예: A 상품 구매자에게 A 상품 또는 B 상품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이를 추가 제공하는 경우)

7. “정상적인 상습관에 비추어 애프터 서비스로 인정되는 경제상의 이익”에 대해

(1) 이 “애프터 서비스로 인정되는 경제상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상품 또는 역무의 특징, 그 서비스의 내용, 필요성, 해당 거래의 약정 내용 등을 감안하여, 공정한 경쟁 질서의 관점에서 판단한다.

(2) 이와 관련하여, 공정경쟁 규약이 설정된 업종에 대해서는 해당 공정경쟁규약이 정하는 바를 참고한다.

8. “정상적인 상관습에 비추어 해당 거래와 관련된 상품 또는 역무에 부속한다고 인정되는 경제상의 이익”에 대해

(1) 이 “상품 또는 역무에 부속한다고 인정되는 경제상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상품 또는 역무의 특징, 그 경제상의 이익 내용 등을 감안하여, 공정한 경쟁질서의 관점에서 판단한다.

(2) 이와 관련하여, 공정경쟁규약이 설정된 업종에 대해서는 해당 공정경쟁규약이 정하는 바를 참고한다.

(3) 상품의 내용물 보호 또는 품질 보전에 필요한 한도 내의 용기포장은 경품류에 해당하지 않는다.